

의안 번호	2071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심 사 보 고 서</p>
----------	------	-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4. 7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3. 4. 7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4. 27.(목)

2. 제안설명 요지 (정책사업단장 민병률)

가. 제안이유

- 청년의 연령을 조례상 알기 쉽게 명시하고, 매년 수립되는 청년정책 시행계획과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일원화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청년의 연령을 알기 쉽게 명시(안 제2조)
- 일자리 창출계획과 청년정책 시행계획 일원화 조문 신설(안 제4조)
- 시행규칙에 관한 불필요한 조문 삭제(안 제14조)

다. 근거법규

-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신옥범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의 연령을 알기 쉽게 명시하고, 청년정책 시행계획과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일원화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청년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.
2. ~ 4. (생략)